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90
----------	---------

발의일자	2017. 8. 22.
발 의 자	표주숙·김향란·강철우 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6인)

1. 제안이유

-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4조)
- 라.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등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8. 25. ~ 8. 30.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검토완료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업소현황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일반(휴게) 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모범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좋은식단 실천업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중위생업소	<input type="checkbox"/> 이·미용업소 <input type="checkbox"/> 숙박업소 <input type="checkbox"/> 목욕장업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사업 <input type="checkbox"/> 음식문화개선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단체현황	단 체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사 무 실 소 채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지원요구	지원사업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p>「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 (대표자)</p> <p>거창군수 귀하</p>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 가. 규 모 :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5.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4.18.,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별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떡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營業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營業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營業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營業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營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1호, 2016.12.2., 일부개정]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인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 2017.12.3.]**